

제6장

소송 사건 수 및 변호사 선임 현황



제6장 소송 사건 수 및 변호사 선임 현황

1. 연도별 민사 및 형사사건 처리건수 및 변호사 선임건수

연도	민사사건 ¹⁾			처리	형사사건 ²⁾		
	처리	선임	선임률(%)		국선	사선	선임률(%)
2002	206,938	86,187	41.6	-	-	-	-
2003	242,600	100,932	41.6	-	-	-	-
2004	253,376	114,360	45.1	-	-	-	-
2005	253,654	113,762	44.8	-	-	-	-
2006	299,794	168,511	56.2	276,117	70,523	60,397	47.4
2007	309,051	169,260	54.8	316,045	86,704	63,124	47.4
2008	331,891	168,170	50.7	350,134	100,209	68,483	48.1
2009	288,167	132,880	46.1	367,728	110,557	69,364	48.9

【출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¹⁾ 제1심 민사본안사건만 해당함.

²⁾ 치료감호사건 및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건수는 제외됨.

- 민사사건의 변호사 선임건수는 계속 증가하던 중 2007년부터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세계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판단됨. 반면,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건수는 계속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2. 2009년 소송별 처리건수 및 변호사 선임건수

구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계	
	처리 건수	선임 건수	처리 건수	사선 선임	국선 선임	처리 건수	선임 건수	처리 건수	선임 건수	처리 건수	선임 건수
전심급	1,161,003	292,467	367,728	69,364	110,557	57,261	20,490	23,887	15,954	1,609,879	508,832

【출처】 법원행정처

- 위 자료는 전심급 본안사건만의 통계자료임.
- 선임건수는 소송당사자 일방만이 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와 쌍방이 모두 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를 합한 수치임.

가. 변호사 선임률

구분	민사	형사(국선포함)	가사	행정	합계 평균
선임률(%)	25.2	48.9	35.8	66.8	31.6

【출처】 법원행정처

나. 민사소액사건 변호사 선임률

처리건수	선임건수	선임률(%)
814,297	123,250	15.1

【출처】 법원행정처

- 전체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변호사 선임률은 15% 정도에 그치고 있음.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액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일반 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 프로그램을 운영중임(제13장 대국민 법률지원 활동 참조).

3. 기타 변호사 참여 사건

가. 헌법재판소 사건 수(2009년)

구분	접수	처리	미제
위헌법률	36	23	49
탄핵	—	—	—
정당해산	—	—	—
권한쟁의	12	11	15
헌법소원	1,439	1,511	546
합계	1,487	1,545	610

【출처】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은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선임되므로 2009년 접수 1,487건과 처리 1,545건은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으로 추정됨.

나. 대한상사중재원 사건 수(2009년)

구 분	사건 수				
	총 사건 수	변호사 대리사건 수			
		신청인	피신청인	쌍방	합계
2009년 중재사건	318	39	23	100	162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 2009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318건) 중 변호사가 중재대리한 사건은 162건으로 약 51%의 변호사 선임 비율을 나타냄.

※참고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참여한 사건]

구분	국제 상거래	국내 상거래	해사	건설	기술	금융	지적 재산권	부동산	합계
중재 사건수	51	85	41	70	11	2	10	9	279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 위 자료는 2009년 한 해 동안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참여한 사건 수로 총 279건이며, 참여한 변호사 수는 159명임.

다. 법원조정센터 사건 수

1) 서울법원조정센터(2009. 4. 13.~2010. 4. 12)

구분	종전미제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제건수
조정신청	223	1,418	1,421	220
조정회부	92	1,309	877	524
합계	315	2,727	2,298	744

2) 부산법원조정센터(2009. 4. 20.~2010. 4. 19.)

구분	종전미제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제건수
조정신청	57	518	490	85
조정회부	0	432	370	62
합계	57	950	860	147

- 위 통계는 각 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임.
- 조정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되는데, 상임 조정위원은 11명으로 모두 변호사이고(민사조정법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 비상임 조정위원은 총 426명 중 109명이 변호사임.
- 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조정장은 조정담당판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상임 조정위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조정위원으로는 비상임 조정위원 2인이 참여하게 됨.
- 상임 조정위원(변호사)은 조정장으로 사건에 참여하게 되므로 조정위원회의 모든 사건을 처리하게 됨. 변호사인 비상임 조정위원의 사건 처리 수는 별도 집계된 자료가 없음.

참고자료

국민참여재판 제도⁹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 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의 흐름도]



1.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직업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및 그 이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거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동 제도는 우선 기존의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가 아닌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2008년부터 약 5년간 시범 시행을 한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2012년부터 한국 실정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확정하고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로써,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

⁹ 대법원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minwon/min_9/min_9_3/) 내용을 정리함.

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하되,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대상사건 피고인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된다.

[2008년/2009년 제1심 신청/처리/미제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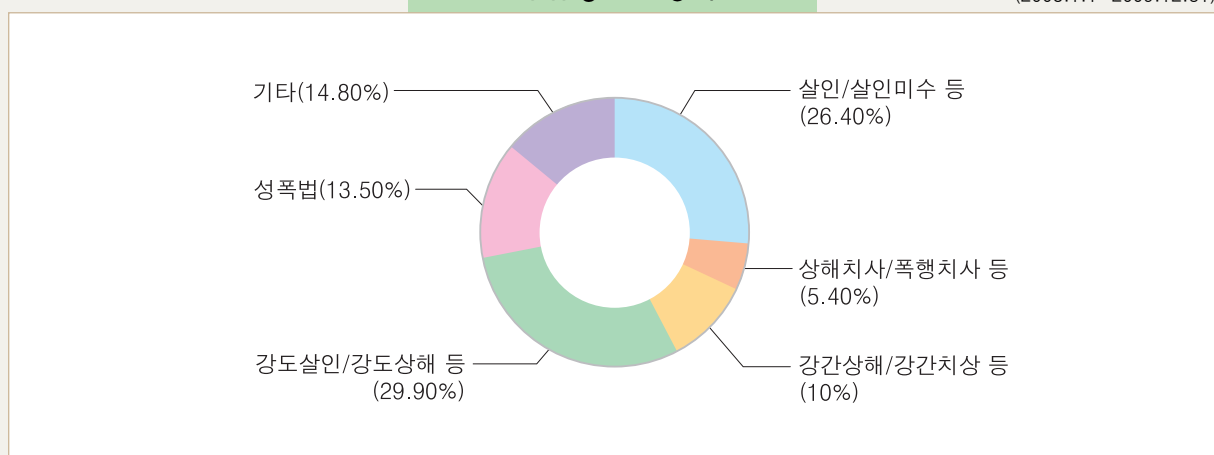
(2008.1.1~2009.12.31)

접수		처리								미제
		합계		국민참여재판		배제		철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233	215	92.3	64	27.5	61	26.2	90	38.6	18
2009	336	308	91.7	95	28.3	75	22.3	138	41.1	46
합계	569	523	91.9	159	27.9	136	23.9	228	40.1	46

【출처】 <http://blog.naver.com/low.zzang?Redirect=Log&logNo=150095458604>

범죄 유형별 신청비율

(2008.1.1~2009.12.31)



- 대상 범죄 11,498건 중 4.9%인 569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됨.
- 신청사건 569건 중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건수는 159건으로 27.9%임(피고인 철회 40.1%, 법원의 배제 23.9%).
- 법원의 배제사유로는, ① 배심원 안전 위협,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같은 항 제2호), ③ 기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3호)가 있는데, 76.5%가 ③의 사유임.